|  |  |  |
| --- | --- | --- |
| **연구개발비용 세전추가공제 관련 정책****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3]70호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장생산건설병단재무국:《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국무원령제512호) 및《중공중앙 국무원의 과학기술 체제개혁 심화 국가혁신체계 구축 가속에 관한 의견》등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과기부 동의를 거쳐 연구개발비용 세전추가공제 유관정책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기업이 연구활동에 종사하여 발생한 다음의 비용 지출은 세전추가공제 연구개발비용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기업이 국무원 유관 주관부문 또는 성급인민정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근거하여 재직 중 직접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해 납부한 기본양로보험비, 기본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공상보험비, 출산보험비와 주택공적금(2) 연구개발활동에 전문적으로 사용된 각종 기구와 설비의 운행 및 유지관리, 조정, 점검, 수리 등 비용.(3) 고정자산을 구성하지 않는 샘플과 샘플기 및 일반테스트 수단으로 구매한 비용 (4) 신약 연구제조 임상시험비.(5) 연구개발 성과 검증비용.2. 기업은 자질을 갖춘 회계사사무소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초빙하여, 당해연도에 추가공제가 가능한 연구개발비용 특정감사보고서 또는 검증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3. 주관세무기관은 기업이 신고한 연구개발 항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기업에 지시급(地市級) (포함)이상정부과기부문이 발급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검증의견서를 제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기업이 적용받는 연구개발비용 세전공제정책의 기타 관련 문제는 《국가세무총국의 (기업 연구개발비용 세전공제 관리방법(시범시행)》 (국세발[2008]116호)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 본 통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2013년 9월 29일 |  | **关于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有关****政策问题的通知**财税[2013]70号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国家税务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根据《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国务院令第512号）和《中共中央 国务院关于深化科技体制改革加快国家创新体系建设的意见》等有关规定，经商科技部同意，现就研究开发费用税前加计扣除有关政策问题通知如下：　　一、企业从事研发活动发生的下列费用支出，可纳入税前加计扣除的研究开发费用范围：　　（一）企业依照国务院有关主管部门或者省级人民政府规定的范围和标准为在职直接从事研发活动人员缴纳的基本养老保险费、基本医疗保险费、失业保险费、工伤保险费、生育保险费和住房公积金。　　（二）专门用于研发活动的仪器、设备的运行维护、调整、检验、维修等费用。　　（三）不构成固定资产的样品、样机及一般测试手段购置费。　　（四）新药研制的临床试验费。　　（五）研发成果的鉴定费用。　　二、企业可以聘请具有资质的会计师事务所或税务师事务所，出具当年可加计扣除研发费用专项审计报告或鉴证报告。　　三、主管税务机关对企业申报的研究开发项目有异议的，可要求企业提供地市级（含）以上政府科技部门出具的研究开发项目鉴定意见书。　　四、企业享受研究开发费用税前扣除政策的其他相关问题，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印发〈企业研究开发费用税前扣除管理办法（试行）〉的通知》（国税发〔2008〕116号）的规定执行。五、本通知自2013年1月1日起执行。 财政部2013年9月29日 |